

## 220V승압에 따른 기술기준운영요령중 개정

공업진흥청에서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220V승압에 따른 기술기준운영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오니 관련업체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편 집 자

(공업진흥청 고시 제1994-319호)

220V승압에 따른 기술기준운영요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10V전용기기의 제조 및 수입금지 시기란의 “전동미싱”을 가정용전동재봉기”로, 전기그라인더·전기철편다·전기드릴·전기대패·전기톱·전기드라이버 및 기타전동공구의 정격소비전력이 “1KW”이하인 것을 “1.5KW”로, “비디오테이프레코더”를 “비디오테이프레코더(편집과 PC인터페이스 2가지 기능을 갖는 것은 제외한다)로, “모니터”를 “모니터(키보드접속기가 있고 비디오시그널 코넥터가 없는 것 및 개인용컴퓨터와 일체형의 것, 화면이 2이상인 것은 제외한다)”로, “프린터”를 “프린터(정격소비전력이 600W이하인것에 한하며 바코드·영수증·통장·프로타·라벨 및 그래픽 전용의 것 및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의 것은 제외한다)”로 하고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시 기	대 상 품 목
1979. 1. 1	(20) 가요반주기 (21) 레이저디스크플레이어 (23) 콤팩트디스크플레이어
1980. 1. 1	(51) 전기녹음기(정격소비전력이 1KW이하인 것에 한한다)
1994. 6.20	(1) 휴대용텔레비전카메라(산업용텔레비전수상기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2) 교류아크용접기(정격전압이 150V를 초과하는 것은 정격2차전류가 130A이하인 것에 한한다) (3) 비디오폰 (4) 전기냉장고(정격소비전력이 700W이하인 냉각장치를 갖는 것으로서 유효내용적이 1000ℓ 초과 1500ℓ 이하인 것) (5) 전기냉수기(정격소비전력이 500W이하인 냉각장치를 갖는 것으로 주우서등 액체 음료용의 것) (6) 텔레비전수상기(액정프로젝타의 것) (7) 전기제빙기(정격소비전력이 500W이하인 냉각장치를 갖는 것으로 슬러쉬 상태의 제빙의 것)

[별표 2] 110/220V 겸용기기의 제조 및 수입금지시기란의 “전동미싱”을 “가정용전동재봉기”로, 전기그라인더·전기샌더·전기드릴·전기대패·전기톱·전기드라이버 및 기타 전동공구의 정격소비전력이 “1KW”이하인 것을 “1.5KW”로, “텔레비전 수상기(산업용텔레비전 수상기는 제외한다)”를 “산업용텔레비전 수상기는 제외한다)”를 “텔레비전수상기(액정프로젝터를 포함하고, 산업용텔레비전수상기는 제외한다)”로, 전기세탁기의 “정격소비전력”을 “세탁시의 정격소비전력”으로, “비디오테이프레코더”를 “비디오테이프레코더(편집과 PC인터페이스 2가지 기능을 갖는 것은 제외한다)”로, “모니터”를 “모니터(키보드접속기가 있고 비디오시그널 코넥터가 없는 것 및 개인용컴퓨터와 일체형의 것, 화면이 2이상인 것은 제외한다)”로, “프린터”를 “프린터(정격소비전력이 600W이하인것에 한하며 바코드·영수증·통장·프로타·라벨 및 그래픽 전용의 것 및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의 것은 제외한다)”로 하고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시 기	대 상 품 목
1994. 1. 1	(33) 가요반주기 (34) 레이저디스크플레이어 (35) 콤팩트디스크플레이어
1994. 6.20	(1) 전기냉장고(정격소비전력이 700W 이하인 냉각장치를 갖는 것으로서 유효 내용적이 1000ℓ 초과 1500ℓ 이하인 것) (2) 전기냉수기(정격소비전력이 500W 이하인 냉각장치를 갖는 것으로 주우서등 액체음료용의 것) (3) 전기제빙기(정격소비전력이 500W 이하인 냉각장치를 갖는 것으로 슬러쉬 상태의 제빙의 것)
1994. 4. 1	(51) 전기녹즙기(정격소비전력이 1KW이하인 것에 한한다)
1997. 1. 1	(1) 휴대용텔레비전카메라(산업용텔레비전수상기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2) 교류야크용접기(정격전압이 150V를 초과하는 것은 정격2차전류가 130A이하인 것에 한한다) (3) 비디오폰

부 칙(1994. 1. 25)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안**

### 민원불편 직소전화 설치

공업진흥청에서는 업무와 관련하여 업체 및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민원행정쇄신을 위한 건의와 불법·부당한 처리 및 비위등을 신고하며, 산업표준화법등 5개 법령상 행정규제완화를 건의할 수 있는 민원불편 직소전화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불편 직소전화로 접수된 민원은 공업진흥청장이 해당국실(기관)에 직접 지시하여 그 처리 결과를 통보함으로써 민원을 최단시간내에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한 것이니 민원인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불편 직소전화번호 : (02) 502 - 0110